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95. 5. 1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는 삭제 시켜줌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에도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읍·면 지역의 잡종재산 매각 범위를 종전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관사 운영비 부담에 있어 종전에는 시장이 사용하는 1급 관사에만 부담하는 것을 부시장이 사용하는 2급 관사에 까지 확대하는 부분 개정 사항으로 별 다른 하자나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운영의 폭을 넓혀줌과 함께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